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 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변경하고, 명칭 변경으로 인해 각 조별 문맥을 일치시키고,
-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인 해산시 재산귀속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법인명칭 변경(제명, 안 제1조, 제2조)
- 해산시 잔여재산은 재단의 정관에 따르도록 변경(안 제12조)
-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법규에 따름 준용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」, 「민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과 합의
- 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”를 “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산업발전법 제8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”을 “「산업발전법」 제8조 및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”으로, “구미디지털전자·정보기술단지(이하 “기술단지” 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”을 “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설립 및 운영)”을 “(법인격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술단지는 민법”을 “기술원은 「민법」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설립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“시장”이라”를 ““시장”이라”로, “기술단지내”를 “기술원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본 재단”을 “기술원”으로 , “법인”을 “재단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재원조성)”을 “(재원의 조달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제4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 중 “재단”을 “기술원”으로 하고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”를 “정관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·2항의 업무위탁시에는 각각 비용 등”을 “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재단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”를 “기술원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재단”을 “기술원”으로, “사업년도”를 “사업 연도”로, “회계년도에 의한다”를 “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의거 조성된 재원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재단”를 “따라 조달된 재원은 기술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재단의 업무·회계”를 “기술원의 업무, 회계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재단”을 “기술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해산시 재산귀속)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,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 및운영지원조례	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 및 산업기술 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규 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자 구미디지털전자·정보 기술단지(이하 “기술단지” 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 및 「산 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 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----- ----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 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----- ----- -----.
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 기술단지 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(이하 “재단”이 라 한다)으로 설립한다.	제2조(법인격 및 운영) ① 기술원 은 「민법」 -----따른 ----- ----- 한다.
②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단지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.	②----- “시장”이라 ----- ----- 기술원내----- ----- -----.
③본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	③기술원-----

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
로 정한다.

제3조(재원조성) ① 재단의 재산
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
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재산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
업 등의 출연재산
4. 기타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
는 수익금 등

②시장은 제2조제1항에 의하여
설립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
재원 및 기술단지조성에 필요한
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호의
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10. (생략)
11. 기타 기술단지의 설립목적
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재단은 제4조에
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
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
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
있다.

---재단-----
-----.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
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
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
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
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
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
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
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
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기술원은-----

-----정관에 따라 재단
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
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----.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·2항의 업무위탁시에는 각각 비용 등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참여기관 등과의 관계) 재단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출연·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운용) 재단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9조(재원의 사용범위) 제3조에 의거 조성된 재원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재단의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.

제10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-----.

제7조(참여기관 등과의 관계) 기술원은-----.

제8조(회계운용) 기술원-----사업연도-----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.

제9조(재원의 사용범위) ----- 따라 조달된 재원은 기술원의-----.

제10조(보고 및 검사 등) ----- 기술원의 업무, 회계 -----

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제12조(해산시 재산귀속) 재단의 해산시에는 잔여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, 잔여자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인계한다. <신 설> 제13조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-----기술원----- ----- -----. 제12조(해산시 재산귀속)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,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14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---	--

관련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잔여재산의 귀속)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
□ 민법

제80조(잔여재산의 귀속)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.

소관 실·과		과학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김 우 춘
	담 당	장 응 재
	담 당 자	우 정 현 (480-6153)